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헌 재
장 관

○대통령령 제18707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①법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법 제1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승용자동차중에서 별표 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2월 21일을 말한다.

③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법 제1조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법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7조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로 하고, 동호나목중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를 “고급사진기”로 하며, 동항제1호의3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동항제16호중 운동선수용의 것인 경우”를 “법 제18조제1항제10호”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나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입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단서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 단서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6조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4항제2호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을 “「석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 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4 호 본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6호의 과세물품란의 가목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 법」”으로 하고, 동표 제7호의 과세물품란의 가목(2), 나목(2) 및 라목 (2)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사업법」”으로,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5호 단 서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해외이주법”을 “「해외이 주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의 기준(제4조의2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1”로 구분되 는 승용자동차일 것
2. 당해 승용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다음 각목에 규정된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일산화탄소 : 0.50g/km 이하
 - 나. 질소산화물 : 0.25g/km 이하
 - 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30g/km 이하
 - 라. 입자상물질 : 0.025g/km 이하
 - 마. 매연 : 10% 이하
 - 바. 측정방법 : ECE-15 및 EUDC 모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낮은 경유승용차의 조기 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법률 제7224호, 2004. 10. 16. 공포·시행)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헌재
장관

●대통령령 제18708호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라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중 과실주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한 자
2. 당해 주조연도에 제9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중 과실주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

②법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이라 함은 당해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를 말한다.